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25일, 조인철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4.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2026.4.3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5.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조인철의원)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관리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은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

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강대훈)

동 개정안은 4대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연구성과 활용 및 공공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관리 의무와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임.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제한하고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¹⁾, 그 취지상 직무 관련 행위에 대한 제한과 절차적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일반법인데, 각 과기원 등의 창업 지원 과정에서 제도 운영상 일정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개별법에 예외를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우선, 창업지분에 대한 사적이해관계자 적용 제외 특례(안 제9조의3 제2항)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지분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해당 기업을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아 직무 수행 시 신고·회피 의무를 부과하고, 그 구체적인 운영은 각 기관별로 여건에 맞게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운영하는 체계로 되어있는데, 일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창업관련 내부 규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지분 보유 및 창업 휴직 후 복직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함에 따라 연구자의 창업 활동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자의 창업 활동 및 지분 참여를 보장하여 연구성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사적이해관계자 요건에서 배제하고, 이를 4대 과학기술원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부담이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 등의 창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절차적 부담을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둘째,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창업과 이해충돌 관리의 세부 기준은

사립대학교 및 국·공립 대학교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히 유사한 사립대 및 국·공립대가 그 내용이 동일하진 않더라도 기관별 자체 기준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기준을 자율적으로 지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원도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창업과 이해충돌 관리의 세부 기준은 기관의 내부 규정과 절차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충돌방지 제도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제공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음,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 및 겸직 허용 특례(안 제9조의3제3항)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자의 외부 활동과 대가 수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그간 보수적인 잣대로 엄격하게 적용되던 이해충돌방지 규제에서 벗어나 연구자의 후속 기술지원과 정당한 대가 수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를 가지며, 기술 상용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과학기술원에 대하여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 관련 특례를 두는 것은 실질적 효과보다 선언적 의미가 더 큰 반면,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현장의 문제점이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석상 혼란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